

## 3

연말정산  
과다공제 주요 유형

과다공제 유형	내 용
① 소득금액 기준(100만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·사업·기타·연금소득, 양도소득,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, 추가공제,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② 부양가족 중복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</li> </ul>
③ 사망자 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</li> </ul>
④ 주택자금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『부적격 유형』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.31.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(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)</li> <li>-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(2013년 이전 3억원) 초과 주택[2013년 이전 취득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]</li> <li>-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</li> </ul> </li> <li>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</li> </ul>
⑤ 신용카드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</li> <li>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</li> </ul>
⑥ 연금저축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</li> <li>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</li> <li>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⑦ 보험료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⑧ 의료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(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)</li> <li>상해보험·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 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·국민건강보험공단(본인 부담상한제)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⑨ 교육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</li> <li>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</li> <li>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·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⑩ 기부금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</li> <li>기부금영수증 상 '일련번호', '기부일자'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'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'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</li> </ul>

## 〈소득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기준〉

- 총급여(=연봉 - 비과세소득)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총급여 333만원 -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
-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양도차익(=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) 200만원 -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= 양도소득금액 100만원(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)
-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퇴직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100만원 = 퇴직소득금액 100만원
-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 - 총수입금액 1,000만원 - 필요경비 900만원 = 사업소득금액 100만원
- 종합소득금액 · 퇴직소득금액 ·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
\*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·교육비·기부금·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